

단체표준을 활성화하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최흥건

hgchoe@kpu.ac.kr

국가표준을 확충하고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기술표준원 가족들을 지면을 통해 만난다고 생각하니 먼저 가슴이 뭉뚱해집니다. 특히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대해 큰 격려를 보냅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기술표준원의 표준화 업무중에 국가표준 이외의 또 다른 중차대한 업무 부문은 바로 단체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체표준의 정립을 위해 기술표준원이 과거부터 구성적 역할을 하여 왔지만 앞으로 이 단체표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술표준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는 공업진흥청장이 단체표준을 승인하여 줌으로서 단체표준의 확충·보급을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기술표준원에서 이를 승인하여주는 법적 제도가 없어진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표준은 대저 낮은 개념부터 사내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 단체표준은 생산자 등의 주로 업종단체에서 작성

된 표준으로 그 엄격도 면에서 보면 사내표준보다는 조금 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표준보다는 더 엄격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과거 공업진흥청장이 신청된 단체표준의 승인시 국가표준보다 더 엄격하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은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법에 의거 단체표준 제정 등에 대한 신고·승인을 의무화하였으나, 1999년도에 기업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단체표준의 제·개정을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은 국가표준과 사내표준의 교량적인 역할과 국가표준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건데, 많은 업종단체가 재정적, 기술인력의 취약성 등으로 기인하여 적극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단체표준의 수가 1,000종에 못 미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70,000여종으로 가히 단체표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단체표준의 운영은 450여개의 민간부문의

표준개발기관(SDO : Standard Develop Organization)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중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ASME(미국기계학회), UL(보험협회), SAE(자동차공학회), NFPA(국가화재방지협회) 등 10대 표준개발기관의 단체표준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체표준의 제정절차 등을 ASTM의 경우를 참고로 살펴보면 기업체, 개인 등 이해관계자가 ASTM에 제정·개정 신청을 하면 TG(타스크포스 그룹), SC(분과위원회), Main C(기술위원회), Society(학회위원회), COS(표준위원회)를 거쳐 단체표준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개정에는 많은 전문가가 ASTM 소속 전문분야별 위원회(TG, SC, Main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정을 하고, 제안된 규격을 검토하게되며 투표하여 발간하게 되는데, 위원들은 무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타국 전문가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표준은 이러한 단체표준을 ANSI(미국표준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승인하여 정립하고 있는데, 약 13,000종이 ANSI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표준개발기관의 표준개발절차서를 ANSI에 제출 개발기관으로 인정(Accredits Developer)받고 표준개발기관의 표준을 신청에 의해 ANSI가 미국국가표준(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으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내의 모든 표준에대한 연방정부 즉, 국가차원에서 관리·조정은 우리나라 기술표준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 NIST(국립표준기술원)가 담당하고있으며, NIST 원장이 「표

준정책법정부위원회(ICSP)」 의장으로 NTTA법에 의해 임의합의표준의 사용·개발·시행을 위한 정책·절차 개발, 이행의 지도·안내·조정 기능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산관리실(OMB) 회람 A-119에 의거 「임의합의표준의사용·개발및 적합성평가활동에대한연방정부기관의참여」의 미국선도기구로서의 역할을 NIST 원장이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표준에 있어서는 표준관련 국가기관의 수장이 표준의 사용·개발·지도·안내·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단체표준으로 법적 근거와 관련한 체계를 살펴보면, 산업표준화법 제28조(단체표준의 제정등)에 의거 단체표준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개정하되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단체표준인증표시) 및 제25조(우수 단체표준제품)의 근거로 보아 단체표준인증 업무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업종단체가 너무 수의 사업에 치중하는 듯이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이러한 품질인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보급의 확대를 도모한 것 등은 중소기업의 진흥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표준의 개발단계부터 업종단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규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에 대해서만 기술표준원에서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단체표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단체표준

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여할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모든 단체에 대한 단체표준의 총체적,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업종 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기에는 그 기반 구축이 미흡하므로 기술표준원에서는 선진 외국의 단체표준 운용 실태를 조사·비교하여 산업표준화 관련 법규 등에 단체표준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며, 단체표준간 또는 단체간의

상충 또는 다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표준원에서 단체표준을 승인하여 줌으로서 표준으로서의 권위 확립과 표준의 종합적인 제도권에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전과같이 승인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더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가 바뀌어도 일일이 기술표준원 직원들께 인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지면을 통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내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